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67호
2. 발 의 자 : 이효원 의원
3. 발의일자 : 2024. 2. 5.
4. 회부일자 : 2024. 2. 7.

II. 제안이유

- 문화재 등의 용어가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어 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를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III.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에 ‘문화재’를 ‘국가

유산'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2항).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일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수정함.(안 제2조제1항제1호).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입법예고(2024. 2. 14. ~ 2. 18.)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이효원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67호로 발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문화재” 용어의 통칭을 “국가유산” 으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위법 정비사항을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일괄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재 문화재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¹⁾되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금년 5월 17일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개의 조례에 사용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관성 확보 및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모순 방지 측면²⁾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나.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7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4. 5. 17.] [법률 제19248호, 2023. 3. 21., 일부개정]

2)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제2항 중 “문화재” 를 “국가유산” 으로,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³⁾에 따른 국가유산”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부칙은 동 일괄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일인 금년 5월 17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 측면에서 동 일괄개정조례안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일괄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917, 2024. 2. 16.).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한수(2180-8269)

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